

#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현찬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519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

발 의 자 : 이현찬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김호평, 한기영, 이동현,  
송재혁, 강동길, 김용석,  
이세열, 김희걸, 김수규,  
장인홍, 장상기 의원 (11명)

## 1. 제안이유

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의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할 필요 있음

## 2. 주요골자

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함(안 제9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를 제10조로 하고,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비밀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9조(비밀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.</u></p>
<p><u>제9조</u> (생략)</p>	<p><u>제10조</u> (현행 제9조와 같음)</p>